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According to Increase of Overseas Direct Purchase)



2018年 8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김종덕

本 論文을 金 鍾 德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申英蘭 (인)

委員：金煥成 (인)

委員：金玟聖 (인)



2018年 6月

韓國海洋大學校 海洋金融·物流大學院

< 목 차 >

Abstract	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제2장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선행연구	4
제1절 해외직구의 개념과 유형	4
1. 해외직구의 개념	4
2. 해외직구의 유형	5
제2절 선행연구	7
1. 해외직구 관련 선행연구	7
2. 외국의 통관제도	9
제3장 해외직구 현황 및 문제점	12
제1절 해외직구 현황	12
1. 개요	12
2. 국가별 수입실적	13
3. 품목별 수입실적	14

제2절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	16
1. 통관절차 개요	16
2.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	19
제3절 통관제도상 문제점	21
1. 일반통관시 납세신고와의 관계 미정립	22
2. 일반통관 건에 대한 통관서류 보관의무 적정성	23
3. 일반통관 절차 적용시 문제점	25
제4장 통관제도 개선방안	28
제1절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제도 개선	28
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납세신고 방법 개선	28
2.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제도 개선	31
3. 서류보관 의무 폐지	33
제2절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34
제5장 결 론	3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38
참고 문헌	39

< 표 목차 >

<표 2-1> 특송화물 중 해외직구물품 비중	4
<표 2-2> 미국 특송화물의 통관유형	10
<표 3-1> 국가별 해외직구물품 반입 현황.....	13
<표 3-2> 해외직구 품목별 통관현황.....	14
<표 3-3> 2017년 국가별 품목별 통관현황.....	15
<표 3-4>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방법별 현황	17
<표 3-5> 해외직구 관세부과 현황	18
<표 3-6> 목록통관 적발현황.....	18
<표 3-7> 해외직구물품 통관방법.....	19
<표 3-8>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20
<표 3-9>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20
<표 3-10> 일반신고물품 중 목록배제물품 비중	24
<표 3-11> 물품통관시 신고항목 비교	25
<표 3-12> 일반신고와 목록통관 신고항목 비교	26
<표 3-13> 항공화물로 반입시 구비서류 비교.....	27
<표 4-1> 관세청장이 정한 부과고지대상 품목.....	29
<표 4-2> 보정심사 심사생략.....	30
<표 4-3> 가격신고 생략대상.....	31
<표 4-4> 해외직구 일반신고 신고항목.....	32
<표 4-5>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32

< 그림 목차 >

<그림 1-1>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
<그림 2-1> 해외직구 유형 및 통관절차.....	6
<그림 2-2>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통관절차	11
<그림 3-1> 연도별 해외직구물품 반입 현황.....	12
<그림 3-2> 특송화물로 반입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흐름도.....	16
<그림 3-3> 총 관세징수액 중 해외직구 비중.....	17
<그림 3-4> 목록통관 흐름도.....	19
<그림 3-5>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절차 비교	21
<그림 3-6> 해외직구와 일반무역절차 비교.....	27
<그림 4-1> 특송화물 중 일반거래물품과 해외직구물품 현황.....	28
<그림 4-2> 일반신고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현황.....	29
<그림 4-3> 간이신고 현황 및 건당 평균구매금액.....	30
<그림 4-4> 해외직구물품의 간이/일반신고시 평균구매금액.....	33
<그림 4-5> 홍콩·중국의 싱글윈도우 개념.....	34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ustoms Clearance System According to Increase of Overseas Direct Purchase

Kim, Jong Deog

*Department of Shipping &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Marine Finance and Logistic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e-commerce has been growing by more than 40% each year since 2010 due to the changes in consumers who value price and quality and who want to make reasonable purchases, the spread of the Internet including mobile, fast international delivery, aggressive marketing by online shopping mall operators, and convenience of payment.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current customs clearance system for items brought in from foreign countries through e-commerce (item directly purchased overseas).

Although in principle, items directly purchased overseas are subject to simplified customs clearance, the general customs clearance procedure may be applied if there is suspicion of smuggling or tariff evasion or if an item is worth USD 150 or more. Note, however, that the general customs clearance is applied to items imported by enterprises and is consequently not suitable for items directly purchased overseas and brought in by individuals.

This study presented short-term measures including improving the reporting and payment of taxes such as the tariff on items directly purchased overseas, reducing the notified information to be suitable for e-commerce, and waiving the obligation to maintain documents.

It also proposed long-term measures such as implementing a single window for shopping mall operators, international deliverers, and customs authority and redesigning the proces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n e-commerce to assure the reliability and visibility of transaction at the same time for the promotion of e-commerce.

WCO has cited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y tax authorities to promote e-commerce, which is creating new opportunities in the world market. Note, however, that we could not find any country that is operating a customs clearance system adequate for e-commerce.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improving the customs clearance of e-commerce goods.

Keywords: customs clearance system, overseas direct purchase, e-commerce, express cargo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는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고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결제방법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물품(이하 “해외직구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제도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을 원칙으로 하나,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통관절차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수입하는 해외직구물품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신고 방법 개선, 물품신고시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신고항목 축소, 그리고 서류보관 의무 면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사업자, 국제운송인 및 세관당국이 함께 싱글윈도우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WCO는 세계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세관당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 통관제도, 해외직구물품,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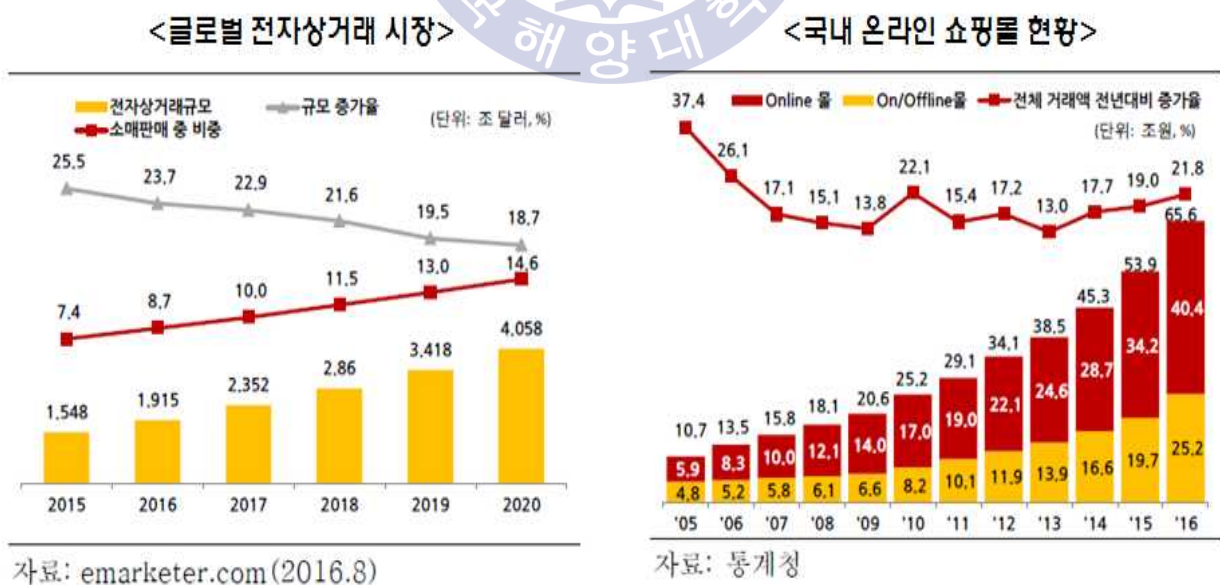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자상거래(e-commerce)¹⁾ 시장은 인터넷 확산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은 서적, 의류 및 신발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건강보조식품 등의 물품으로 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5년 1.5조 달러에서 2020년 4.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On/Offline 몰 포함)도 '05년 10.7조원에서 2016년의 경우 65.6조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1-1>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처음 사용(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특히, 인터넷 확산과 국제배송의 신속화로 인해 해외직구물품도 2011년 4.7억 불에서 2017년 21.1억불로 급증하고 있다.(출처 : 관세청 2018년 보도자료)

한편, 외국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관제도는 기업물품에 적용되는 일반통관절차와 여행자휴대품·우편물·개인 탁송품(전자상거래 물품 포함) 등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1991년 11월 한미항공협정 체결에 따라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목록통관·간이통관 등 별도의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관제도는 새로운 거래 형태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 본 연구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관세법의 목적¹⁾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입²⁾·수출³⁾ 또는 반송⁴⁾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 통관제도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거래는 해외직구와 역직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범위는 개선 실익이 있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제도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이하 ‘해외직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국내 수입통관절차와 관세법규에 대해 연구하고 현행 통관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세법 제1조(목적), 개정 2016.12.20. 법률 14379호

2)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관세법 제2조)

3)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관세법 제2조)

4)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관세법 제2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현행 법규, 외국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다뤄진 내용이 많았으며, 통관제도 관점에서는 마약 등의 위해물품 차단 등 물품관리 측면에서 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인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통관절차를 법규 측면에서 세밀하게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제도상 개선방안은 현행 제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통관행정상 전자상거래는 매년 40% 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통관제도 측면에서는 여행자휴대품 및 우편물 중심의 간이통관절차를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에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장에서는 해외직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해외직구물품에 관한 학술지 등을 참고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한편, 통관제도는 WCO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를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현황 및 통관절차를 분석하고, 통관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직구물품 현황은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였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세부 통관절차도 연구하였다. 특히,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직구 물품 중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음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절차를 거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절차를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납세신고 관점과 물품신고 관점에서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장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선행연구

제1절 해외직구의 개념과 유형

1. 해외직구의 개념

‘전자상거래’¹⁾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또한,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²⁾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문한 뒤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간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의미하는데, 인터넷과 국제택배운송의 발달, 능동적 소비행태로의 변화 등으로 태동한 전자상거래는 Private Import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해외직구’란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반입(수입)하는 것으로 B2C 방식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의 일부인 해외직구는 신속한 배송과 통관절차의 편리성을 보유한 특송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송화물 중 해외직구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8%에서 2017년 71%까지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물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송화물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표 2-1> 특송화물 중 해외직구물품 비중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일반거래물품			해외직구물품			합계	
	건수	비중	금액	건수	비중	금액	건수	금액
'11년	5,906	(52)	11,034	5,602	(48)	472	11,508	11,506
'12년	6,200	(44)	13,503	7,941	(56)	704	14,141	14,207
'13년	6,566	(37)	14,097	11,155	(63)	1,036	17,721	15,133
'14년	7,058	(31)	14,351	15,531	(69)	1,545	22,589	15,896
'15년	7,659	(33)	14,285	15,842	(67)	1,521	23,501	15,806
'16년	9,552	(35)	15,252	17,377	(65)	1,622	26,929	16,874
'17년	9,749	(29)	16,408	23,592	(71)	2,110	33,341	18,518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1)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2)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2. 해외직구의 유형

한국소비자원의 2016년 「해외직구 이용 및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직구는 구매형태에 따라 직접배송·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직접배송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한 후,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직접배송 방식의 경우, 외국에서 반입되는 만큼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외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과 큰 차이가 없다. 국내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일부 해외 쇼핑몰의 경우, 해외 배송비를 국내 배송비 수준으로 크게 낮추거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을 제공하고, 배송기간도 3~4일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2)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직접 주문과 결제 및 배대지를 입력하고,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을 말한다. 즉, 해외 판매자가 국내로의 국제운송을 지원하지 않거나 그 비용이 상당한 경우,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뒤 배송대행비 결제 등이 완료되면 국내로 배송하고 있다. 배송대행업체는 물품의 부피·무게 등에 따라 배송비를 책정·청구하며 의류와 같이 가벼운 물품의 경우 배송대행지에 면세한도 내의 다수제품을 보내 한꺼번에 배송대행을 신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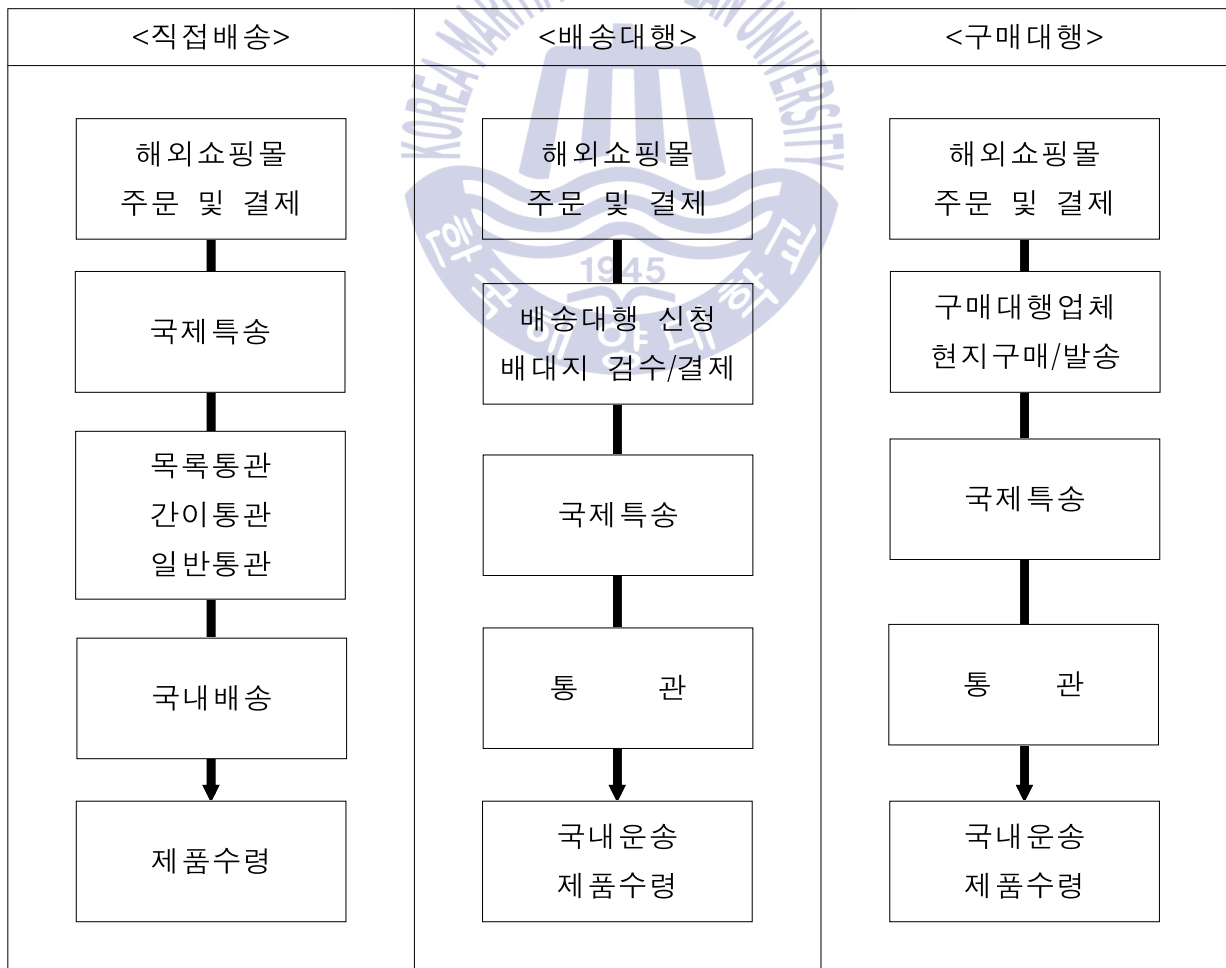
3) 구매대행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쇼핑몰형과 위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쇼핑몰형은 오픈 마켓과 같이 여러 판매자가 해외 판매 제품을 판매 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과 일반 쇼핑몰처럼 구매대행업체가 현지구매 가능한 제품을 자체 운영하는 쇼핑몰에 게재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거의 동일하다. 구매하기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품원가·물류비·수수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가격이 책정되므로 개별적 비용 파악이 어려우며 제품 선택이 한정적이다.

위임형은 구매희망제품을 구매대행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현지상품 구입비용, 대행수수료, 해외운송료 등 구매대행비용을 통보받은 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수입원가 및 물류비, 수수료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1> 해외직구 유형 및 통관절차



제2절 선행 연구

1. 해외직구 관련 선행 연구

전자상거래 중 해외직구와 관련된 학위 논문, 국내외 학술지, 단행본 등을 통해 해외직구 현황 및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그간 연구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성봉·김유찬(1998)¹⁾은 인터넷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정책상의 과제를 소비세·관세·소득세 등 세무행정 전분야로 구분하고, OECD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광범(2001)²⁾은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통상문제로,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에 적용되는 조세원칙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공급장소의 개념과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관세 측면에서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의 과세여부에 대해 WTO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등 조세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를 연구하였다. 다만, 관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무체물(S/W 등)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최장우(2009)³⁾는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통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근절을 위해 ‘특별통관업체의 지정 및 관리요건’을 강화하고, 상용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실제 구매자와 수입자의 동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액물품의 면세범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오찬규(2009)⁴⁾는 전자무역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속통관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세관절차의 생략과 간소화 측면에서 신속통관 필요성에 대한 연

1)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무역관련 조세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3)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관세학회지 제10권 제1호, pp229-253)

4) 전자상거래활성화에 따른 국제특송화물의 통관에 관한 연구

구를 하였다.

한상훈(2015)¹⁾은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교부, 목록통관 시행, 반품시 환급조치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도용·지적재산권 침해·밀수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통관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시장의 확대와 해외직구(역직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인용(2015)²⁾은 해외직구물품이 간단한 목록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됨에 따라 허위신고 및 관세 탈루, 마약을 비롯한 수입금지 물품의 밀반입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외직구를 규제하여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심리적 회유책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충호(2017)³⁾는 특송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은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동시에 간소화된 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노력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개선, 통관목록 기재 항목 추가 및 국내 배송지 상이내역 제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 해외직구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불법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 강화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해외직구물품을 일반통관절차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매자를 납세의무자의 관점에서 보는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 해외직구와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전자무역연구 제13권 제1호)

2)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3)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3-17)

2. 외국의 통관제도

1)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기구 동향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WC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 국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5가지 범주¹⁾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 WCO에 의하면 무역 원활화(Facilita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전자상거래 사업자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Data Exchange/ Cooperation with e-commerce Operators), 통제와 감독(Control and Enforcement), 조세 징수(Revenue Collection)로 나눌 수 있다.

무역원활화를 위해서는 ICT 사용, 화물 도착전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당면과제는 구매자 및 판매자가 관련 절차를 잘 파악하고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편서비스에는 전자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메카니즘이 없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세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위험관리란 위험요소의 식별·평가·우선순위 결정으로 금지(제한)물품의 국내반입 가능성을 취소화하거나 조화롭게 하는 행위이다. 당면과제로는 우편물 등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부정확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관 및 관련업계와 Single-Window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와의 협력은 데이터 교환을 통해 원활한 통관을 제공하고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통제와 감독은 모든 세관당국의 기본이고,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저가신고에 대해 종종 애로를 겪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관과 우편사업자간 정보를 교환하고 세금에 대해 사전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WCO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무역촉진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주로 고찰하였고, 납세와 관련하여서는 우편사업자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1)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WCO, 2017.3)

2) 외국의 전자상거래(해외직구)물품 통관 제도

정재호·마정화·정경화의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2012.8, 한국조세연구원)」에 의하면, 미국의 통관절차는 USD 2,000 이하의 상업용 물품, 휴대품 또는 선물용의 비상업용 물품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간소화된 통관절차(Informal Entry)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관세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반출한 이후에 관세정산이 생략된 1단계의 수입신고 절차라는 측면에서 자가 정산으로 간주된다.

<표 2-2> 미국 특송화물의 통관 유형

구분	대상	신고서식	제출서류
Informal Entry	개인용 USD 200 이하	B/L 적하목록	-
	USD 200 초과 USD 2,000 이하	CF 3461 CF 7501	송장 사본 사전 적하목록으로 대체 가능
일반통관	USD 2,000 이하	CF 3461 CF 7501	수입신고인 자격증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기타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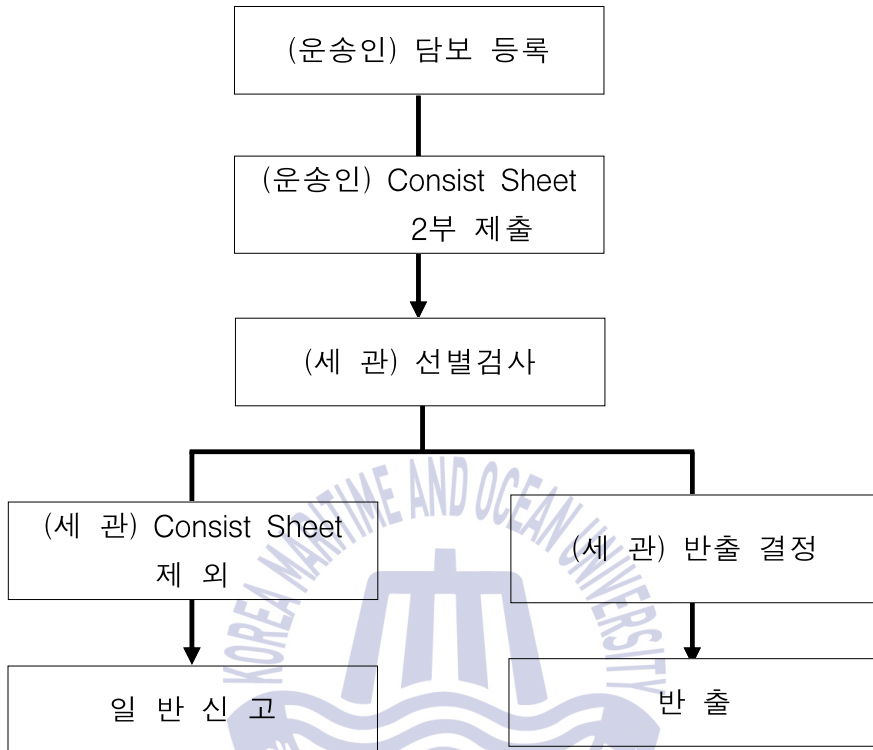
호주의 통관절차는 우편물을 제외하고 일반 또는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품 가격이 AUD 1,000 이하인 대량의 항공수입화물에 대해서는 특별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격을 갖춘 특별신고인의 요약화물신고(abbreviated cargo Report)만으로 세관장은 수입을 허가한다.

일본의 통관절차는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화물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다만, 20만엔 이하의 물품은 일반신고보다 기재항목이 간단한 간이통관제도를 이용하거나, 화물운송장에 추가로 기입함으로써 수입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캐나다 통관절차는 가격이 CAD 1,600 이하인 특송화물의 경우 특송 LVS (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을 통해 통관상 편의를 제공하여 간소화된 방법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특송 수입의 경우, CAD 20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는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2> CIRO(Courier Imports Remission Order) 통관절차



CIRO 절차를 적용 받기 위해 운송인은 세관에 운송인담보(carrier bond security)를 등록해야 하며, Consist Sheet는 반출자료이자 관세자료이므로 운송인은 6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CAD 1,600 이하인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 LVS(Low Value Shipm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운송인은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 신고일자·운송인명·운송수단 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화물반출 리스트(cargo release list)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CIRO 절차와 동일하게 반출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관세 납부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의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살펴보았다.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e-commerce를 중요한 무역거래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종전의 일반통관절차나 간이한 통관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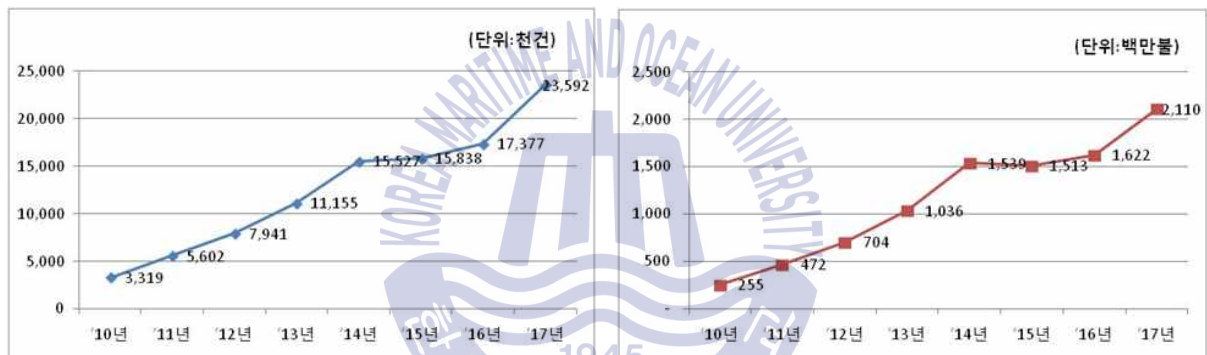
제3장 해외직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해외직구 현황

1. 개요

2017년도 관세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수입규모는 2,359만건, 21억 1천만불로, 2016년에 비해 건수는 35.6% 증가하고 금액은 29.1% 증가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해외직구물품 반입 현황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2010년 이후 해외직구물품 반입물량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2015년의 경우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가 1,584만건, 15억 1천만불로 2014년에 비해 건수로 2% 증가하였으나, 금액으로 1% 감소하여 매년 40% 이상 가파르게 치솟던 증가세¹⁾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해외직구 둔화요인은 미국의 환율상승과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시 반송절차의 불편 등 소비자 불만, 병행수입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등 해외에서의 물품구매가 쉬워지고 달러·엔화 등 환율 하락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에 힘입어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1) [해외직구 건수] ('11)증 57% → ('12)증 42% → ('13)증 41% → ('14)증 39% → ('15)증 2%
 [해외직구 금액] ('11)증 72% → ('12)증 50% → ('13)증 47% → ('14)증 49% → ('15)감 1%

2. 국가별 수입실적

2017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계를 산정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 73%, 2016년 65%, 2017년에는 56%로 미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중국 등은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장은 미국 중심에서 중국·유럽·일본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2016년 1,937천건(151백만불)에서 2017년 4,088천건(272백만불)으로 건수 111%, 금액 81%나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2016년 992천건(76백만불)에서 2017년 2,015천건(137백만불)로 건수 103%, 금액 79%가 증가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반입되는 건수가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은 2016년 1,135만건(1,060백만불)에서 2017년 1,330만건(1,215백만불)로 건수 17%, 금액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 3-1> 국가별 해외직구물품 반입 현황

(단위: 천 건, 천 불, %)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 국	11,640	1,109,866	11,345	1,060,770	13,302	1,214,630	17	15
비중	73	73	65	65	56	58		
중 국	1,250	104,993	1,937	150,899	4,088	272,499	111	81
비중	8	6	11	9	17	13		
유 럽	1,817	195,597	2,531	290,631	3,506	418,409	39	44
비중	11	13	15	18	15	20		
일 본	784	63,218	992	76,421	2,015	136,818	103	79
비중	5	4	6	5	9	6		
기 타	372	49,754	590	55,819	681	67,881	15	22
비중	3	4	3	3	3	3		
합 계	15,863	1,523,428	17,395	1,634,540	23,592	2,110,240	36	29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3. 품목별 수입실적

해외직구 관심 품목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2005년 및 2006년에는 의류(30.2%), 신발(9.0%), 서적(7.7%)이 전체 해외직구물품의 47.6% 점유하였으나, 2017년에는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497만건(20.8%)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그 뒤를 이어 화장품 287만건(12.2%), 식품류 282만건(11.8%), 의류 272만건(11.6%), 전자제품 211만건(9.0%), 신발류 165만건(7.0%) 순이었으며,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스마트폰 보조배터리·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2016년 대비 80%가 증가하였으며, 가정용 청소기는 252%(38,554건→135,567건)나 급증하였다. 이어서 건강기능식품이 42%, 화장품류 18%, 기타식품류 24%, 의류 26%, 신발류가 23% 각각 증가하였다.

<표 3-2> 해외직구 품목별 통관현황

(단위 : 천 건)

순위	품목	2016년도		순위	품목	2017년도		전년대비 증감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건강식품	3,506	20%	1	건강식품	4,974	21%	42%
2	화장품	2,429	14%	2	화장품	2,867	12%	18%
3	기타식품	2,276	13%	3	기타식품	2,821	12%	24%
4	의류	2,153	12%	4	의류	2,722	12%	26%
5	신발	1,341	8%	5	전자제품	2,112	9%	80%
6	전자제품	1,174	7%	6	신발	1,648	7%	23%
7	완구·인형	801	5%	7	완구·인형	1,212	5%	51%
8	핸드백·가방	583	3%	8	핸드백·가방	825	3%	42%
9	시계	174	1%	9	서적류	186	1%	30%
10	서적류	143	1%	10	시계	159	1%	△9%
11	기타 품목	2,815	16%	11	기타 품목	4,066	17%	44%
	합계	17,395	100%		합계	23,592	100	36%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한편, 구매 국가별 특징이 있는데, 미국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2%), 중국은 컴퓨터부품 등 전자제품류(22%), 유럽은 화장품 및 향수(29%), 일본은 젤리·초콜릿 등 식품류(18%)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2017년 국가별 품목별 통관현황

(단위: 천 건)

순위	품목	미 국			품목	중 국		
		2016	2017	(비중)		2016	2017	(비중)
1	건강식품	3,053	4,225	(32%)	전자제품	336	880	(22%)
2	기타식품	1,361	1,620	(12%)	의류	247	707	(17%)
3	의류	1,606	1,475	(11%)	화장품	332	493	(12%)
4	화장품	1,086	1,103	(8%)	완구·인형	222	482	(12%)
5	신발류	973	1,046	(8%)	신발류	102	162	(4%)
6	전자제품	651	877	(7%)	핸드백·가방	79	139	(3%)
7	완구·인형	438	466	(3%)	서적류	17	25	(1%)
8	핸드백·가방	390	467	(3%)	시계	35	31	(1%)
9	서적류	98	108	(1%)	기타식품	17	22	(0%)
10	시계	120	102	(1%)	건강식품	1	5	(0%)
11	기타 품목	1,569	1,813	(14%)	기타 품목	549	1,142	(28%)
		11,345	13,302	(100%)		1,937	4,088	(100%)

순위	품목	유 럽			품목	일 본		
		2016	2017	(비중)		2016	2017	(비중)
1	화장품	840	1,024	(29%)	기타식품	140	361	(18%)
2	기타식품	679	722	(21%)	신발류	105	231	(11%)
3	의류	185	378	(11%)	건강식품	116	254	(13%)
4	신발류	130	193	(6%)	완구·인형	117	226	(11%)
5	건강식품	118	200	(6%)	화장품	97	174	(9%)
6	핸드백·가방	85	179	(5%)	전자제품	72	178	(9%)
7	전자제품	106	173	(5%)	의류	59	108	(5%)
8	완구·인형	20	36	(1%)	서적류	23	47	(2%)
9	시계	4	7	(0%)	핸드백·가방	17	32	(2%)
10	서적류	4	5	(0%)	시계	13	18	(1%)
11	기타 품목	360	589	(16%)	기타 품목	233	386	(19%)
		2,531	3,506	(100%)		992	2,015	(100%)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제2절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

1. 통관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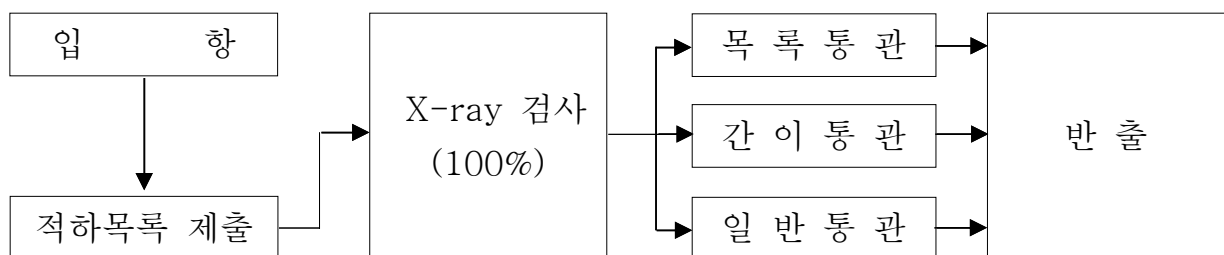
1) 개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직구물품은 국제운송과 국내배송의 신속성 및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의 편리성으로 인해 당해 물품의 99%를 특송업체가 운송하여 반입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송화물이란 특송업체¹⁾가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견품 등을 말한다. 즉, 해외직구물품을 포함하여 특송업체가 반입 또는 취급하는 모든 물품을 말하는데, 특송화물은 물품의 가격, 자가 사용 여부 및 통관제한 여부 등 화물 특성에 따라 목록통관·간이통관 및 일반통관으로 통관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가 입항하면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마약·총기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차단을 위해 모든 특송화물에 대해 X-ray 검색을 실시하게 된다.

<그림 3-2> 특송화물로 반입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흐름도



2017년의 경우, 해외직구로 반입된 24백만건의 물품 중 목록통관 56%, 간이통관 1%, 일반통관 43%를 점유하고 있다.

1) (특송업체) 관세법 제222조제2항 제6호에 따라 외국무역기(선)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또는 견품 등을 송달하는 업체(DHL, Fedex 등)로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로 '17년 기준 233개 업체

<표 3-4>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방법별 현황

(단위 : 천 건, 천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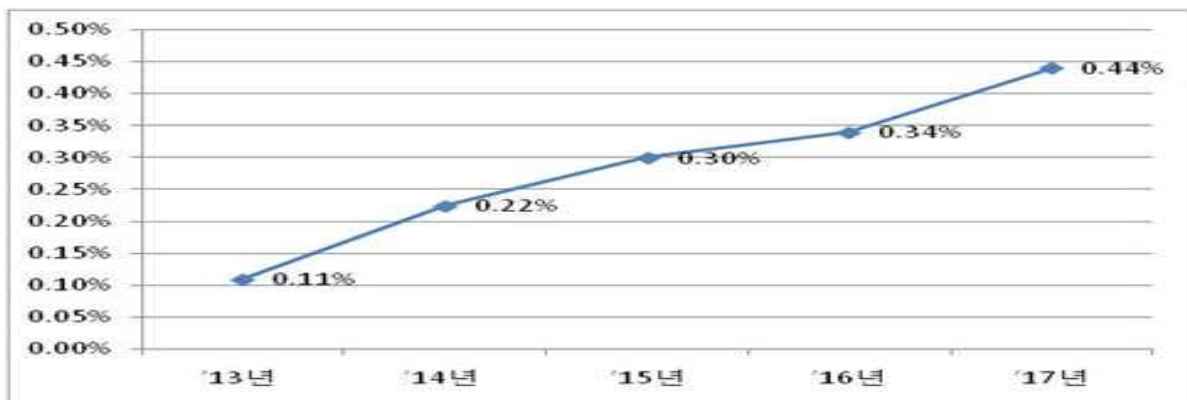
년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0년	건수	1,075	(30)	128	(4)	2,116	(59)	3,319
	금액	56,416	(21)	22,296	(8)	176,633	(64)	255,345
'11년	건수	1,818	(32)	91	(2)	3,693	(65)	5,602
	금액	105,073	(22)	17,161	(4)	350,043	(73)	472,277
'12년	건수	2,845	(36)	39	(1)	5,057	(63)	7,941
	금액	213,324	(30)	9,199	(1)	481,025	(68)	703,548
'13년	건수	3,807	(34)	21	(1)	7,327	(65)	11,155
	금액	330,716	(32)	7,744	(1)	697,258	(67)	1,035,718
'14년	건수	6,588	(43)	31	(0)	8,908	(57)	15,527
	금액	569,725	(37)	5,288	(0)	964,371	(63)	1,539,384
'15년	건수	9,065	(57)	4	(0)	6,769	(43)	15,838
	금액	714,803	(47)	1,283	(0)	797,187	(53)	1,513,273
'16년	건수	9,763	(56)	66	(1)	7,548	(43)	17,377
	금액	719,282	(45)	22,262	(1)	880,742	(54)	1,622,286
'17년	건수	13,217	(56)	159	(1)	10,216	(43)	23,592
	금액	886,811	(42)	50,392	(2)	1,173,037	(56)	2,110,240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2) 징수현황

2017년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한 금액은 37,811백만원으로 총 관세 징수액(85,292억원)의 0.4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3> 총 관세징수액 중 해외직구 비중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또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징수율은 반입된 물품의 총액 21억불(1불당 1,000원으로 환산)의 약 1.8% 수준이다.

<표 3-5> 해외직구 관세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반입금액*(A)	관세(B)	징수율(B/A)
'13년	1,035,718	11,439	1.1 %
'14년	1,539,384	19,623	1.3 %
'15년	1,513,273	25,351	1.7 %
'16년	1,622,286	27,443	1.7 %
'17년	2,110,240	37,811	1.8 %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주 : *) 반입금액을 1불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재구성

3) 마약 등 불법물품 적발현황

간소화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불법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적발내역 중 마약류는 전년대비 290.5%, 총포류는 91.2%, 약사법 위반은 101.9%로 급증하는 등 특송화물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6> 목록통관 적발현황

(단위 : 건, %)

적발유형	'15년	'16년	'17년	전년대비증감
합산과세대상	7,818	4,614	5,949	28.9 %
검역 관련	11,391	12,095	14,938	23.5 %
약사법 대상	2,532	2,536	5,122	101.9 %
기타 요건확인	11,430	12,115	16,039	32.4 %
지재권침해 확인대상	2,602	6,215	6,706	7.9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32	21	61	290.5 %
총포류	62	68	130	91.2 %
모의총포류	36	41	45	9.8 %
도검류	148	220	330	50.0 %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2.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은 가격 및 자가 사용 여부, 통관 제한 여부 등에 따라 통관방법을 목록통관·간이신고·일반신고 3가지로 구분한다.

<표 3-7> 해외직구물품 통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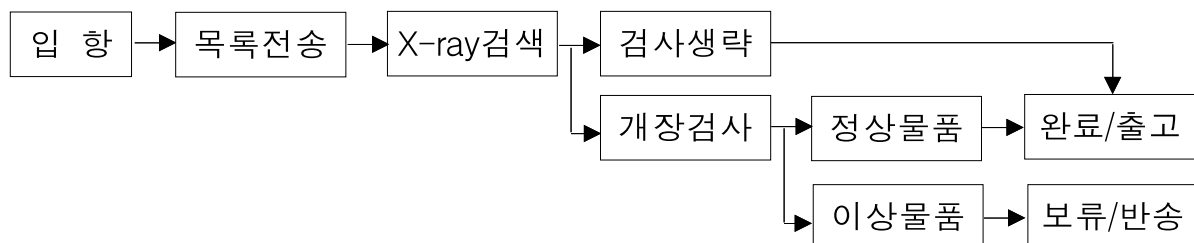
구분	대상물품	신고자	신고방법
목록통관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물품 (미국發은 USD 200)	특송업체	통관목록 제출 (특송업체, 수량, 가격 등 28개 항목)
간이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은 USD 200)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물품	화주, 관세사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 (첨부서류 제출생략)
일반신고	통관제한 물품(목록통관 배제물품 및 간이신고 배제물품),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	화주, 관세사	일반 수입신고서 제출 (총 69개 항목)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1) 목록통관¹⁾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은 USD 200)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방법이다.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물품반출이 되고, 별도의 수입신고는 생략된다.

<그림 3-4> 목록통관 흐름도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1)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시행규칙 제79조의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표 3-8>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2) 해외직구물품 일반신고1) 통관절차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초과 2,000불 이하로써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미 해당 물품은 간이신고 방법으로, 물품가격 미화 2,000불 초과 물품 및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일반신고 방법으로 통관한다.

<표 3-9>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 사전세액대상, 합의세율적용대상,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 품목 등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 법 제226조의 세관장확인대상물품 6. 신고취하(각하)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1) 관세법 제241조~제248조, 수입고시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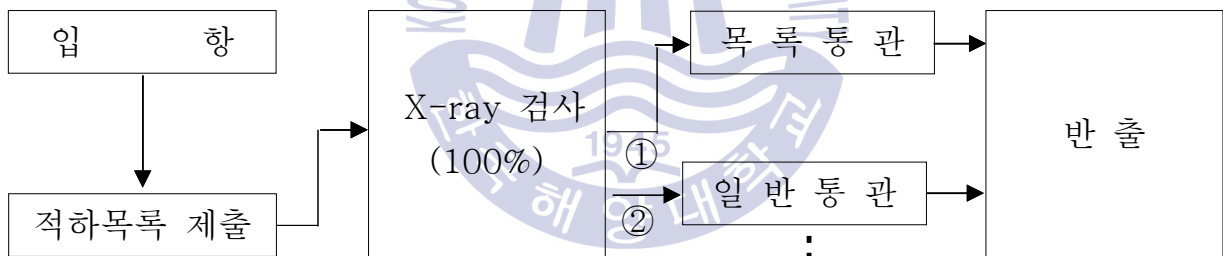
제3절 통관제도상 문제점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를 예시와 같이 비교해 보고, 통관절차상 문제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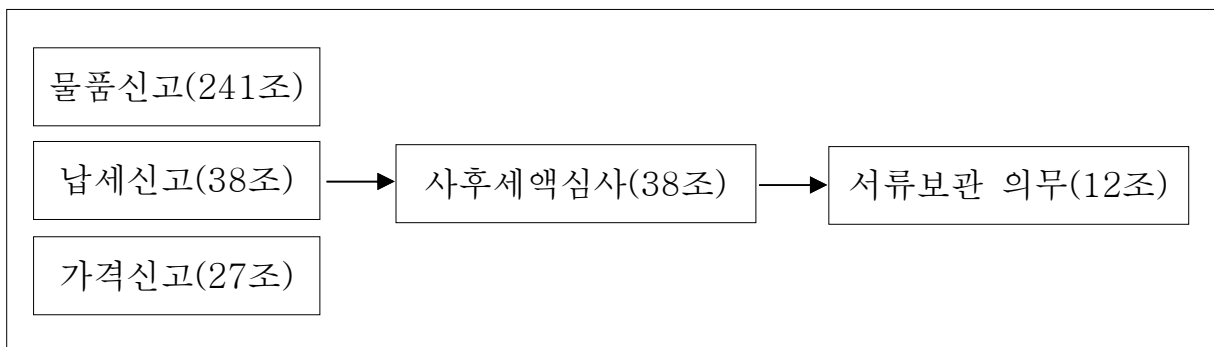
(예시)1) 소비자 A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6병을 89불에 구매한 후, 특송화물로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절차는 이용할 수 없어 일반통관절차를 따라 통관 후 물품을 수령하였다.

관세법령상 일반통관을 이용할 경우, 수입신고시 물품신고와 납세신고, 가격신고의 절차가 필요하며, 통관 후에도 사후세액심사 대상이며 수입한 화주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그림 3-5>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절차 비교



<일반통관시 새롭게 부여되는 절차 및 의무>



1) <예시 근거> 2017년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된 해외직구물품은 23,592천건, 21.1억 불로서 ①1건당 구매금액은 89.44불이다. 또한, 일반신고건은 10,216천건이며 이중 89.1%가 소액면세 대상(150불 이하)이나 목록통관 배제로 일반통관한 ②반입물품의 20.8%가 건강기능식품이다.

1. 일반통관시 납세신고와의 관계 미정립

관세의 납부의무(관세채무)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4대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하지만 관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당해 관세채무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세관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확인 및 통지의무를 납세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고납부제도(납세신고)이고 세관당국이 하는 것을 부과고지제도라고 한다. 현재 신고납부제도가 원칙이고, 부과고지제도는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납세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말하며, 납세신고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신고항목¹⁾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신고 대상물품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 대상물품²⁾을 제외한 물품이며, 납세신고에 의해 확정된다. 부과고지 대상물품은 보관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되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무역거래를 통해 반입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기재부장관이 정한 물품³⁾이다.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에 해당하여 부과고지

1) ①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③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④ 기타 과세가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2) ①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①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②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④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대상물품이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달러 USD 200)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간이신고대상 특송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간이신고 대상물품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13조).

그러나 미화 150불(미국달러 USD 200) 이하인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지만 세관당국의 관리 목적으로 일반통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납세측면에서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부과지대상임에도 관세법령상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세의 납부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¹⁾를 하여야 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²⁾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 직구물품에 대해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민안전 및 사회보호 측면에서 의약품 등 특정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됨에도 통관목록 제출을 불허하고 일반통관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은 수입물품의 안전한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납세신고 및 가격신고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한 화주의 납세와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일반통관 건에 대한 통관서류 보관의무 적정성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관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1) ①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②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2) ①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록 규정되어 있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통관단계에서의 세액심사는 생략하여 신속한 통관을 허용하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수입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관장의 사후심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해외직구물품 중 일반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분석해보면, 일반신고 건 10,216천건 중 미화 2,000불 이상인 건은 1,110천건이며, 이 중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9,106천건으로 89%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징수 목적보다는 국민건강보호 등 안전 목적으로 일반신고를 한 연간 900만건에 달하는 개인 직구물품에 대해 서류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표 3-10> 일반신고물품 중 목록배제물품 비중(최근 5년간)
(단위 : 천 건, 천 불)

년도	구분	전체	일반		목록배제물품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3년	건수	11,155	7,327	(65)	6,895	(94)
	금액	1,035,718	697,258	(67)	459,145	(66)
'14년	건수	15,527	8,908	(57)	8,262	(93)
	금액	1,539,384	964,371	(63)	576,507	(60)
'15년	건수	15,838	6,769	(43)	5,948	(88)
	금액	1,513,273	797,187	(53)	380,648	(48)
'16년	건수	17,377	7,548	(43)	6,777	(90)
	금액	1,622,286	880,742	(54)	417,478	(47)
'17년	건수	23,592	10,216	(43)	9,106	(89)
	금액	2,110,240	1,173,037	(56)	507,616	(43)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3. 일반통관절차 적용시 문제점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을 반입한 화주는 세관장에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신고)이외에 동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 및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탁송품을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 2 규정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목록배제물품임에도 일반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액면세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해 기업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령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수입(물품)신고와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휴대품·탁송품 등에 대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가격기준 미화 2,000불 초과 물품과 동일한 방법의 일반신고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 신고항목의 과다 및 관련 없는 신고항목의 제출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신고인은 목록통관(28개 항목)에 비해 41개 항목이 더 많은 일반수입신고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는 탁송품의 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신고와 납세신고가 결합되어 있는 일반수입통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납세신고항목 등 필요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신고항목도 그대로 제출받고 있다.

<표 3-11> 물품통관시 신고항목 비교

신고구분	신고방법	'17년 비중
목록통관	통관목록 제출(특송업체, 수량, 가격 등 28개 항목)	61.6%
간이신고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 (수입자 등 12개 항목 생략 가능)	1.7%
일반신고	일반 수입신고서 제출 (총 69개 항목)	36.7%

<표 3-12> 일반신고와 목록통관 신고항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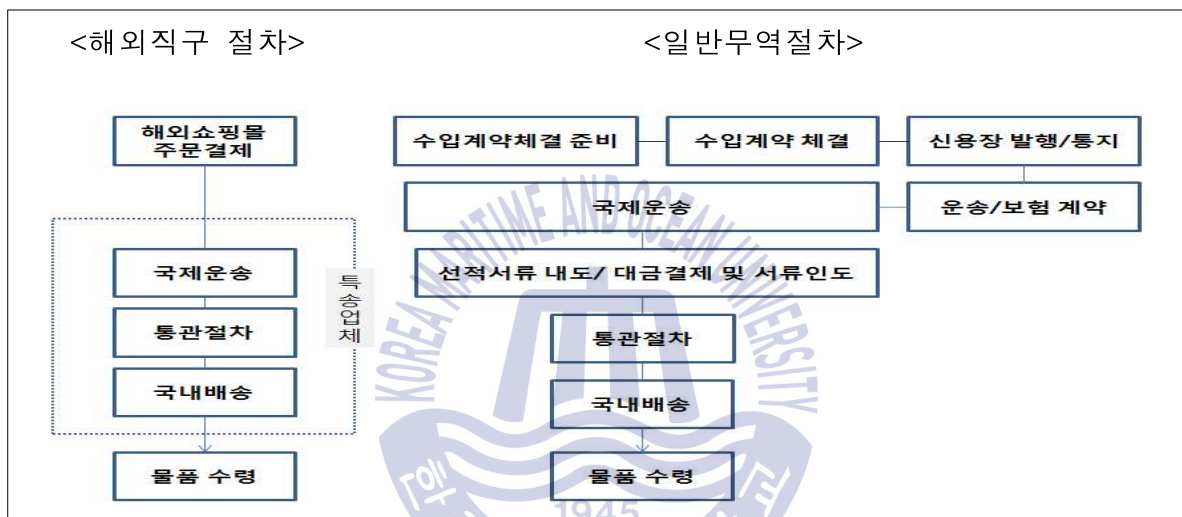
	일반신고	목록		일반신고	목록
1	신고번호		32	상표	
2	신고일		33	모델/규격	
3	세관/과		34	성분	
4	B/L(AWB)번호	0	35	규격수량	0
5	화물관리번호		36	단가	
6	입항일	0	37	금액	
7	전자인보이스제출번호		38	품목번호	0(간이)
8	반입일		39	과세가격	0
9	징수형태		40	순중량	0
10	신고인		41	수량	0
11	수입자	0	42	환금물량	
12	납세의무자		43	사후확인기관	
13	운송주선인	0	44	원산지	
14	해외거래처	0	45	특수세액근거	
15	통관계획		46	수입요건확인	
16	신고구분		47	세목	
17	거래구분	0	48	세율	
18	종류		49	감면율	
19	원산지증명서유무		50	세액	
20	가격신고서유무		51	감면분납부호	
21	총중량		52	결제금액(인도조건)	
22	총포장갯수		53	총 과세가격	
23	국내도착항		54	운임	
24	운송형태		55	환율	
25	적출국	0	56	보험료	
26	선기명	0	57	가산금액	
27	Master B/L(AWB)	0	58	공제금액	
28	운수기관 부호		59	세액	
29	검사(반입)장소		60	총세액합계	
30	품명	0	61	신고인기재란	
31	거래품명		62	총부가가치세과표	

※ 채색된 부분은 납세신고와 관련된 항목(일부항목 생략)

2) 일반무역과 해외직구의 물품 거래절차 상이

일반무역의 경우, 수입계약체결부터 운송·보험계약 등 복잡한 거래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구매대행)하는 등 물품의 매매형태가 단순하고, 가격자료 등은 물품통관을 위해 특송(운송)업체가 해외쇼핑몰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6> 해외직구와 일반무역 절차 비교



또한, 일반통관시 제출해야 하는 무역서류도 일반무역과 해외직구는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상업송장 등 무역관련 서류를 수출자 등이 작성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특송업체에 품명·수량·단가 등을 Data로 제공하여 특송업체가 작성하는 등 일반무역 절차와는 상이하다.

<표 3-13> 항공화물로 반입시 구비서류 비교

구비서류	일반무역		해외직구	
	구비여부	작성자	구비여부	작성자
수입신고서	○	화주 등	○	화주 등
상업송장	○	수출자	○	쇼핑몰
항공화물운송장	○	포워더	○	특송업체
패킹리스트	○	수출자	×	-
납세신고	○	화주	×	-
가격신고	○	화주	×	-
원산지증명서	○	상공회의소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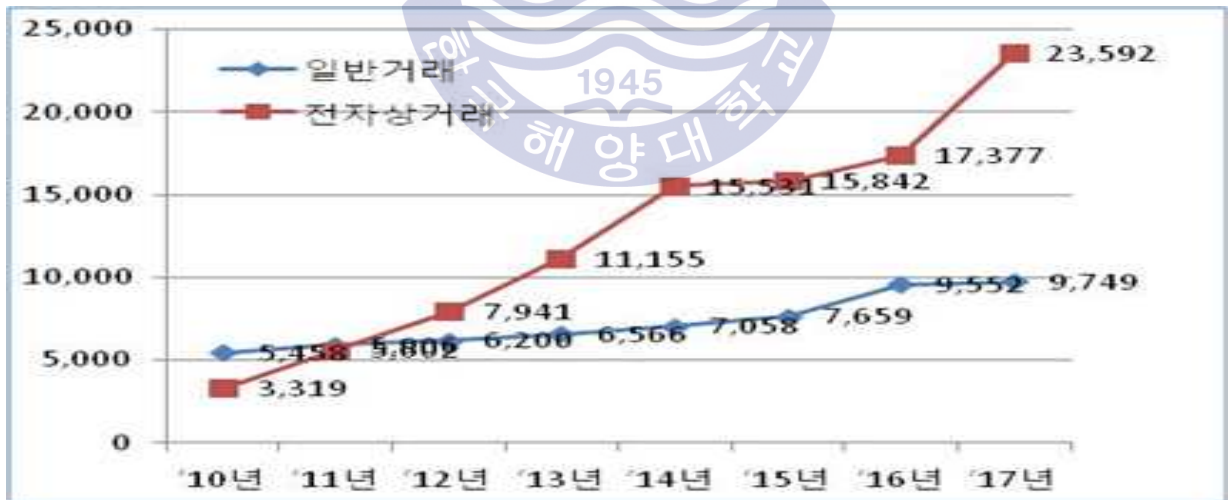
제4장 통관제도 개선방안

제1절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제도 개선

1.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납세신고 방법 개선

관세법령상 부과지 대상물품은 물품의 성질상 납세신고가 적당하지 않는 물품과 납세자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하기 곤란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등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탁송품 중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 간이신고대상 품목은 부과지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물품의 반입통로인 특송화물 중 간이신고대상과 일반신고대상은 부과지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4-1> 특송화물 중 일반거래물품과 해외직구물품 현황 (단위: 천건)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특송화물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이 차지하던 비중이 2010년도에는 37.8%이었으나, 2017년의 경우 70.7%로 급증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전 특송화물에는 견품 등 기업물품이 대부분을 점유했으나 현재는 개인물품이 주로 반입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확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부과고지 대상품목의 제외대상을 ‘특송물품 중 간이신고 특송물품’에서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은 USD 200)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선정되어 일반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부과고지 대상으로 확정하고 사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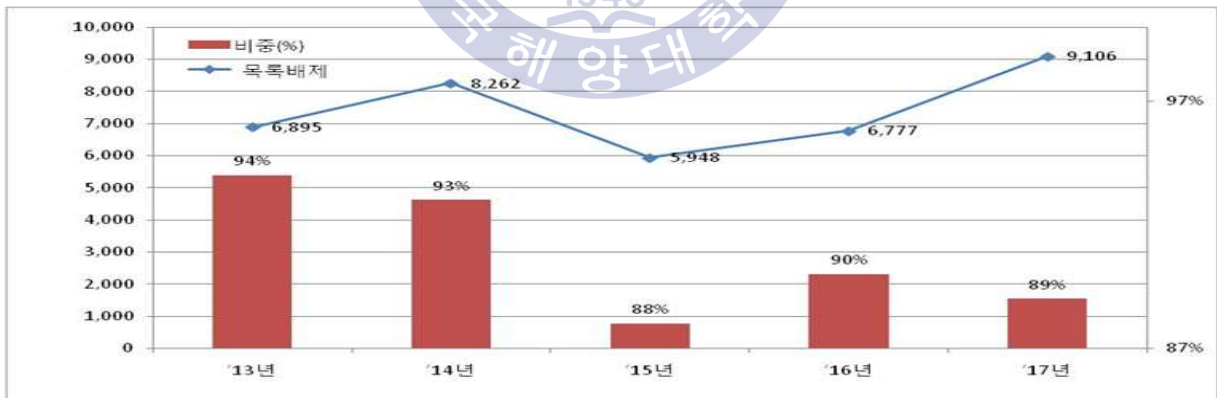
<표 4-1> 관세청장이 정한 부과고지대상 품목1)

종 전	개 선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특송품 (단, 특송물품 중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제외)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특송품 (단,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 불(미국發은 USD 200)을 초과물품은 제외)
2~4 기재생략	2~4 기재생략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신고물품 중 연평균 9백만건 이상에 달하던 사후세액심사 대상에 대한 세관의 관리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2> 일반신고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현황

(단위 : 천건)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또한, 장기적으로 보정심사선별시스템에 의해 선별되는 경우를 제외한 사후세액심사 실익이 낮은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1) 관세청 고시(납세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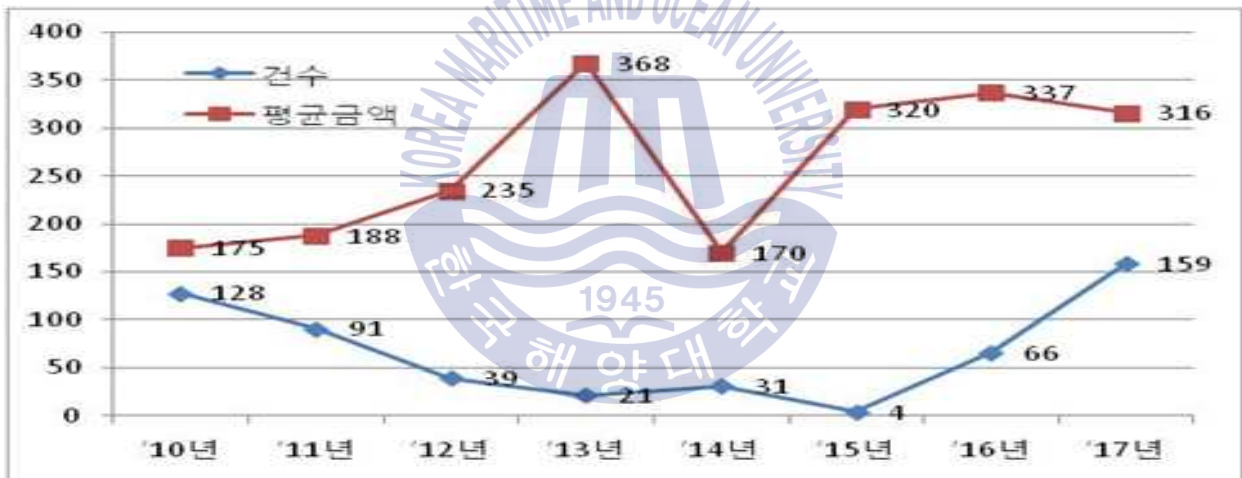
<표 4-2> 보정심사 심사생략¹⁾

종 전	개 선
1~3 반복물품, 세액심사 실익이 없는 경우 등	1~3 좌 동 4. 전자상거래 물품 중 간이신고대상

이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159천건(평균 구매비용 : 미화 316불/건)에 대해 사후세액심사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직구 구매자 편의제공 및 과세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3> 간이신고 현황 및 건당 평균 구매비용

(단위 : 천건, 불)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한편,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가격신고 생략대상물품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수출용 원재료, 특

1) 관세청 훈령(보정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의 취향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을 허위로 제출하여 관세 등을 포탈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표 4-3> 가격신고 생략대상¹⁾

종 전	개 선
1.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2. 종량세 적용물품	1~2 좌 동 3.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2.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제도 개선

해외직구물품을 일반신고 할 경우 수입(물품)신고·납세신고·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외직구물품의 일반수입신고시 납세신고와 가격신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전술한 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신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입신고서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물품신고 항목과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 항목이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으며, 총 6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항목에는 무역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해외직구물품 거래와는 관련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용이하고,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수취하는 탁송품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해외직구물품에 적합한 일반수입신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관세청 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

<표 4-4> 해외직구 일반수입 신고항목(개선 예시)

1	신고번호	13	총포장갯수	24	품목번호
2	신고일	14	국내도착항	25	과세가격
3	세관/과	15	적출국	26	수입요건확인
4	B/L(AWB)번호	16	선기명	27	세목
5	화물관리번호	17	Master B/L(AWB)	28	세율
6	입항일	18	상표	29	감면율
7	반입일	19	모델/규격	30	세액
8	신고인	20	성분	31	총 과세가격
9	운송주선인	21	규격수량	32	운임
10	해외거래처	22	단가	33	환율
11	거래구분	23	금액	34	세액
12	총중량				

또한, 일반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송품장 등 다양한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물품 구매의 경우는 관련 있는 서류에 한정(송품장과 운송장 부분)하여 제출하도록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표 4-5>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1)

1. 송품장
2. 가격신고서
3. 선하증권부분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부분
4. 포장명세서
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만 제출)
6.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제출생략)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 물품만 제)

1)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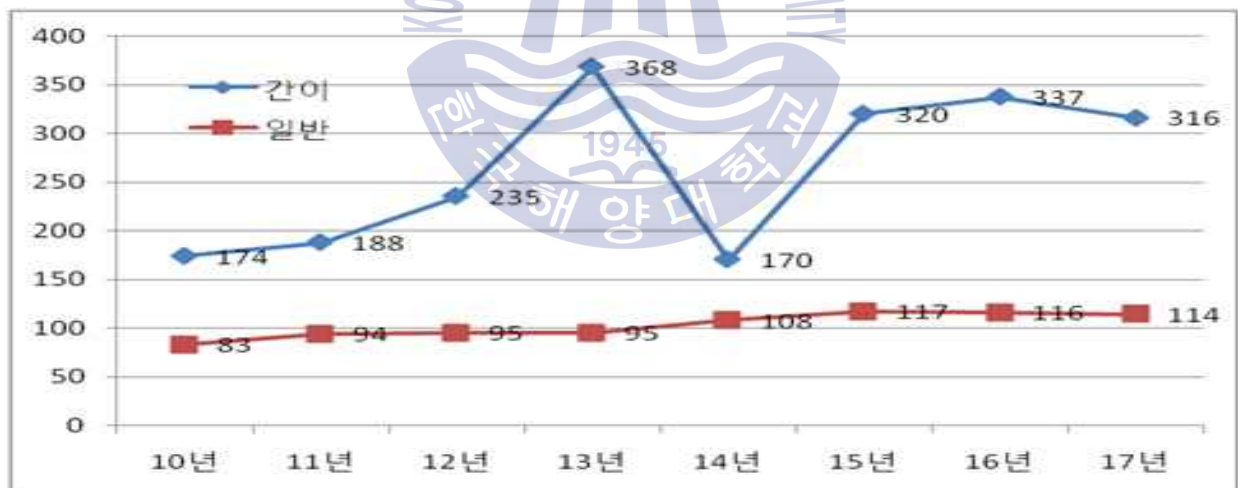
3. 서류보관 의무 폐지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수입신고필증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물품은 2017년 기준 간이신고건의 평균 구매액은 미화 316불, 일반신고건의 평균 구매액은 미화 114불로 오히려 간이신고건(미화 150~2,000불)이 일반신고(미화 2,000불 이상)보다 높은 기형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화 150불 이하로 목록통관 대상이나 의약품 등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이 배제된 물품이 일반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물품 중 일반신고대상은 과세가격이 현저히 낮아 세액을 사후에 심사하기 위해 화주로 하여금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한 법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 4-4> 해외직구물품의 간이/일반신고시 평균 구매금액

(단위 : 미화 불)



자료 : 관세청 내부 자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목록통관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일반신고 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2조에 의한 서류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송품장과 화물운송장을 100%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화 및 의무화하여 관세법 제12조에 의한 서류보관 의무를 원천적으로 생략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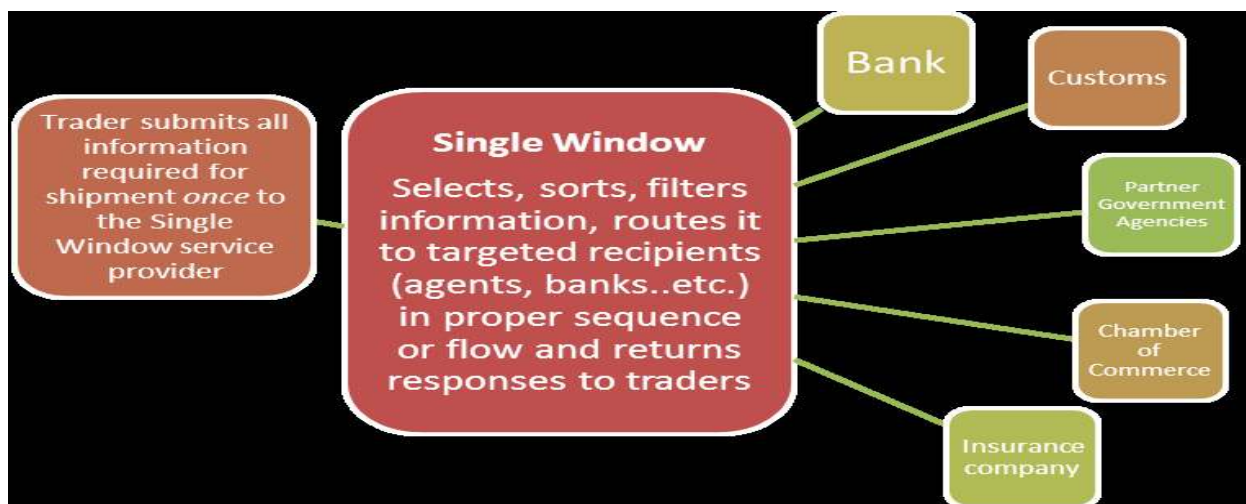
제2절 해외직구물품 통관제도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인터넷 발달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물품은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온라인쇼핑몰 운영인·국제/국내운송인·구매대행인·배송대행인은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WCO는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경에서 신속한 통관과 마약 등 불법물품의 거래 차단을 위해 정보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정보공유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래항목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서 표준과 관련하여 WCO는 국가간 화물의 도착·출발·운송·통관 등에 있어서 세관간 또는 세관-무역업체-타정부 기관간 신고항목을 표준화·단순화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 표준화(CDM:Customs Data Model)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사업자가 단일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방안(Single Window)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5> 홍콩·중국의 싱글윈도우 개념



자료 :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2017.3)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발전을 위해 구매자와 온라인쇼핑몰 및 국제 운송인의 신뢰성 제고는 신속한 통관과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현재 정부와 민간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보안성 강화와 중간 거래비용 절감 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운송·금융·통관 등 무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 하여 합리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의 확산, 특송업체로 대표되는 국제배송의 신속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물품 구매에 따른 결제수단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는 2010년 이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간, 통관행정은 해외직구물품의 급증에 대응하여 반품시 환급절차 간소화,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확대 등을 통한 신속한 반출을 도모하였다. 반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명의도용 및 마약·총기류·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운송업체로 하여금 특송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 실제 국내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면세 대상물품도 분할수입하거나 둘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해외직구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그간의 연구와 정부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송화물로 반입된 물품의 통관절차 중 가장 간소화된 단계인 목록통관 제도에 대한 운영방식. 즉, 어떤 물품을 ‘목록통관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가 핵심 요소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밀수·관세탈루 방지와 미화 150불 이상인 경우에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해외직구 방식이 일반 무역절차와는 전혀 다른 무역방식임을 인정하고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통관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 첫 번째로, 소액면세 대상품목에 해당하나 목록통관에

서 배제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일반신고 방식으로 통관할 경우 납세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 하였다. 목록통관 배제의 목적이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반입물품을 엄정히 심사하는 것(물품신고)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일반신고를 할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물품신고 항목과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 항목이 통합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물품은 구매·국제운송 등의 방법이 일반 무역절차와 상이한데도 신고서식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반 신고를 할 경우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신고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일반신고 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등의 서류보관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화주는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과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관실익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의무를 생략하는 한편, 보관서류의 전자문서화 또는 특송업체에 가격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WCO 등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세계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관당국의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국제무역의 중심이 되어 외국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수령하는 개인무역(e-commerce, Private Import)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통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물품신고 뿐만 아니라 납세신고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통관행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통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장소에 따라 관세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어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따라서 통관에 관한 일반법이 ‘관세법’인 만큼 조속히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를 관세법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수입자는 ‘개인’이나,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반출하는 역직구의 경우 수출자는 ‘개인’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이 된다. 이 경우에도 현행 수출통관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운송 측면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은 특송화물과 우편물(EMS)를 통해 주로 운송되고 있으나, 우편물인 경우 우편 사업자와 세관당국간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물품의 반입이 우려된다. 또한, 사전정보가 없어 신속통관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WCO와 UPU(Universal Postal Union), 국내적으로는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및 온라인 쇼핑몰업체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신고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부과고지제도가 전제되어 있다. 부과고지제도는 과세관청인 세관이 관세 심사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관세 등이 확정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통관시 관세 등 세세를 확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관대상의 증가와 세관공무원의 인원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따라서 세관 인원 등의 확충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참 고 문 헌>

- 곽병곤·송희영(2009),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 관세청 보도자료(2017), “해외직구 금액 20억불 돌파” 등
- 김기인(2005), “한국 관세법 기초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김유찬·이성봉(1998),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충호(2017),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8권 제1호)
- 박지문(2017), “초국경 전자무역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찬규(2009),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특송화물의 통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광범(200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조세체계의 설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인용(2015),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한준(2015), “관세법 법리연구”, 광교이텍스
- 정재호·마정화·정경화(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최장우(2008),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0권 제1호)
- 한국소비자원(2016), “해외직구 이용 및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 한상훈(2015), “해외직구와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제13권 제1호)
- 홍승연(2015), “해외직구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WCO(2017.3), WCO Study Report on Cross-Border E-Commerce